

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심사보고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년 3월 3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3월 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·제111회 부천시의회(임사회)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(2004년 3월15일)
상정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여성복지과장 김정숙)

□ 제안이유

○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,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,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고, 아동의 건전한 보호·교육 및 보호자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○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센터내 부설어린이집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조)

○ 센터의 장, 보육지도원, 간호사, 의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)

○ 센터의 장은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 경력자로 상근하도록 함. (안 제6조)

○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과 여론수렴 기능을 하도록 함. (안 제7조 및 제8조)

○ 수탁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<p>○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, 재 위탁할 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민간위탁기준안을 조례에 명시하지 하면 되지 않는가?</p> <p>○ 조례 제9조에서 비용의 보조에서 “일부 또는 전부”내용을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?</p>	<p>○ 위탁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나 기준안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.</p> <p>○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.</p>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없 음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제233호
의결 연월일	2004. 3. 19

제안년월일 : 2004년 3월 18일

제안자 : 행정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○ 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과 여론을 수렴하고자 설치하는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위원수만 정하고 구성원이나 업무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보육정보센터에서 임의대로 운영할 수 있으므로

○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.

2. 주요골자

○ 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.

(안 제8조 신설)

○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에서 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”를 “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”로 수정. (안 제9조)

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하고, 제8조 내지 제11조를 제9조 내지 제12조로 하며, 제8조(운영위원회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
1.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부천시 관내 보육

관련 단체원 3인, 시의원, 대학교수 및 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위촉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안 제10조(종전의 제9조)중 “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를 “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7조(운영) ① (생략) ② (생략) ③ <u>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자문과 여론수렴을 위하여 10인 이내로 운 영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7조(운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③ (삭제)</p>
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8조(운영위원회) ① <u>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</u> 1. <u>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</u> 2. <u>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</u> 3. <u>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 항</u> ② <u>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</u> ③ <u>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부천시 관내 보육관련 단체 원 3인, 시의원, 대학교수 및 보육업무에 관 한</u> <u>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.</u> ④ <u>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위촉된 위원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u></p>
<p>제8조(위탁기간) (생략)</p>	<p>제9조(위탁기간) (조례안 제8조와 같음)</p>
<p>제9조(비용의 보조) <u>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0조(비용의 보조) ----- ----- <u>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</u></p>
<p>제10조(보조금의 반환) (생략)</p>	<p>제11조(보조금의 반환) (조례안 제10조와 같 음)</p>
<p>제11조(시행규칙) (생략)</p>	<p>제12조(시행규칙) (조례안 제11조와 같음)</p>

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

의안 번호	제233호
의결 년월일	2004. 3. 19 (제111회)

제출년월일 : 2004. 3. 3.

제출자 : 부천시장

□ 제안이유

-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, 가족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영유아보육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어, 영유아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시설 운영의 질적 향상을 지원하고, 아동의 건전한 보호·교육 및 보호자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- 가. 보육정보센터를 부천시 관내에 설치하도록 함.(안 제2조)
- 나. 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, 센터내에 부설어린이집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3조)
- 다. 기능은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·지도, 보육대상자를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라. 시설 종사자로 센터의 장, 보육지도원, 간호사, 의사 등을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- 마. 센터의 장은 보육지도원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경력자로 시장이 임명하고, 센터내에 상근하도록 함.(안 제6조)
- 바. 보육정보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 10인이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과 여론수렴 기능을 하도록 하고,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함.(안 제7조 및 제8조)
- 사.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9조)
- 아. 수탁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0조)

[수정안 포함]

부천시보육정보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, 상담, 보육시설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명칭과 소재지) ①시설의 명칭은 부천시보육정보센터(이하 “보육정보센터”라 한다)라 한다.

②보육정보센터는 부천시 관내에 둔다.

제3조(설치기준) ①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다.

②시장은 사회복지시설 등의 시설을 이용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, 보육정보센터내에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 보육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영유아 및 아동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·지도
2.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
3. 보육교사의 취업정보 제공
4.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보육프로그램 연구개발

5. 보육관련 국내·외 도서 및 자료의 수집·정리·열람
 6. 보육정보 전산망의 구축 및 홍보
 7. 보육관련 정보지 등 간행물 발간
 8. 보육관련단체 행사지원 및 홍보
 9. 부설 시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
 10. 기타 영유아 및 아동보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5조(구성) ①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.
-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보육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사, 간호사, 영양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.
-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은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건강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전담할 종사자가 없는 가정보육시설 등 소규모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제6조(종사자의 자격) ①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②보육지도원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1조제1항 각호의 1 규정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 다만,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.

③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.

제7조(운영) ①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, 학교법인, 영유아 보육 관련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8조(운영위원회) ①보육정보센터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.

1. 보육정보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보육정보센터의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되고, 위원은 부천시 관내 보육 관련 단체원 3인, 시의원, 대학교수 및 보육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위촉 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9조(위탁기간) ①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, 재 위탁할 수 있다.

②위탁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폐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·변경 및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.

제10조(비용의 보조) 시장은 보육정보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.

제11조(보조금의 반환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
2. 사업목적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
3. 시설폐쇄 등으로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
4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위탁하여 운영중인 보육정보센터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.